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06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검사 등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법률 오기를 정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 등에 대한 업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

간이측정기의 성능검사, 사용자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명령,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하고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재정비

나.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안 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법 제31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6.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정지 및 재점검 명령
7.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9.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자	법 제31조제2항제3호	10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u> <u>검사</u>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u><신 설></u>	6. <u>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u> <u>정지 및 재점검 명령</u>
<u><신 설></u>	7. <u>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u> <u>따른 청문</u>
5. <u>법 제28조에 따른 청문</u>	<u><삭 제></u>
6. <u>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u> <u>과태료 부과 · 징수</u>	8. <u>법 제31조제1항제5호</u> ----- --
<u><신 설></u>	9. <u>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u> <u>과태료 부과 · 징수</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721